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역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어, 시·도가 통합되는 경우 입찰 범위가 확대되어 지역 중소기업체의 참여 기회가 축소되는 등 경쟁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예상됨.

이에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광역자치단체가 신설되는 경우에는 지역제한입찰의 범위를 통합 전(前) 관할구역 기준으로 3년간 유지하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계약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 중소기업체가 변화된 경쟁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중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를 “시·도의 관할구역 내”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를 “광역자치단체가”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를 “시·도의 관할구역과”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를 “광역자치단체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시·도가 다른 시·도와 통합되어 광역자치단체가 신설되는 경우에는 그 통합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시·도의 관할구역이 통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① ~ ④ (생 략)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u> <u>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u> <u>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한다)</u> <u>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u> <u>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u> <u>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u> <u>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을 분리</u> <u>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3항</u> <u>을 적용한다.</u> <u><신 설></u>	⑤ <u>시·도의 관할구역 내</u> ----- ----- <u>광역자치단체가</u> ----- ----- ----- ----- <u>시·도의 관할</u> <u>구역과</u> ----- <u>광역자</u> <u>치단체의</u> ----- ----- -----.
⑥ · ⑦ (생 략)	⑥ <u>시·도가 다른 시·도와 통</u> <u>합되어 광역자치단체가 신설되</u> <u>는 경우에는 그 통합된 날부터</u> <u>3년간은 종전의 시·도의 관할</u> <u>구역이 통합되지 아니한 것으로</u> <u>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u> ⑦ · 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